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1025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1. 20.

판결 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4. 접수 제877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체결된 소유권이 전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1) 천안지원 2015. 7.

24. 접수 제877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소외 주식회사 D과 2015. 3. 23. 대출금 21,000,000원, 약정이율 34.9%, 대출기간 60개월로 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D은 2016. 6. 2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3. 13.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나. 2020. 2. 1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C의 대출원리금은 53,116,228원(원금 20,545,901원 + 인수 전 이자 9,231,760원 + 인수 후 이자 23,338,567원)이다.

다. 한편 C은 2006. 11.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있었는데,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호254호로 협의이혼하였다.

라.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 앞으로 2015.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4. 접수 제877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위 2015. 7. 23.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채무자의 무자력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회사 D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20,545,901원의 채무가 있었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0. 주식회사 E에 채권최고액 3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부동산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질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이 법원 2015호254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에서 C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합의한 사실, C은 피고와 이혼한 2015. 6. 17.로부터 7일이 지난 2015. 6. 25. 피고 앞으로 '언제든지 애들 엄마가 원하면 집 명의로 친권자를 애들 엄마 앞으로 돌려주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5. 8. 3. 이 법원 2015느단577호로 자녀 2명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① 피고와 C의 이혼으로부터 1개월 지난 2015. 6. 17.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2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로부터 며칠 뒤에 자녀들의 친권자및 양육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판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친권자 변경의 절차는 피고와 C 이혼 당시 C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협의이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C과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한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C이 협의이혼을 한 후 미성년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던바, 피고는 협의이혼 후 약 12년간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및 C과 피고 사이의 혼인 기간, 피고의 재산 증식에의 기여도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산분할비율은 1: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C이 피고에게 C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달리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162㎡

2.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로명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건물내역 : 조적조 슬래브 지붕

단층 단독주택

67.75㎡

(의 지분 전부)

2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구지방법원 천안지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